

# 전자어음의 할인제도 도입

## 1. 도입배경

○ 조합은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에 대하여 할인 업무를 하고 있는 바, 전자어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2009.11. 9.부터 자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어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어음을 발행토록 하고 있어 그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조합은 건설업계의 이러한 변화추이에 부응하여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9. 8. 17.부터 전자어음 할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조합원들의 많은 이용이 있길 바랍니다.

## 2. 용자한도 및 어음할인 대상

○ 조합원별 좌당 용자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

용자 종류		2009년	2010년	비 고
신용 운영자금	면허 기준좌수 1좌당 한도액	603,000원	548,000원	
	면허 기준좌수 초과 1좌당 한도액	667,000원		
담보운영자금		1,300,000원		
시공자금		1,100,000원		
어음할인		1,100,000원		

오니 한도에 대하여는 거래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자종류간 중복이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 어음할인한도 범위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어음할인이 가능합니다.
  - 조합원이 공사를 실제로 이행하고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은 할인 불가)
  - 시공능력평가액이 2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발행한 어음
  - 할인일부터 만기일까지 120일 이내인 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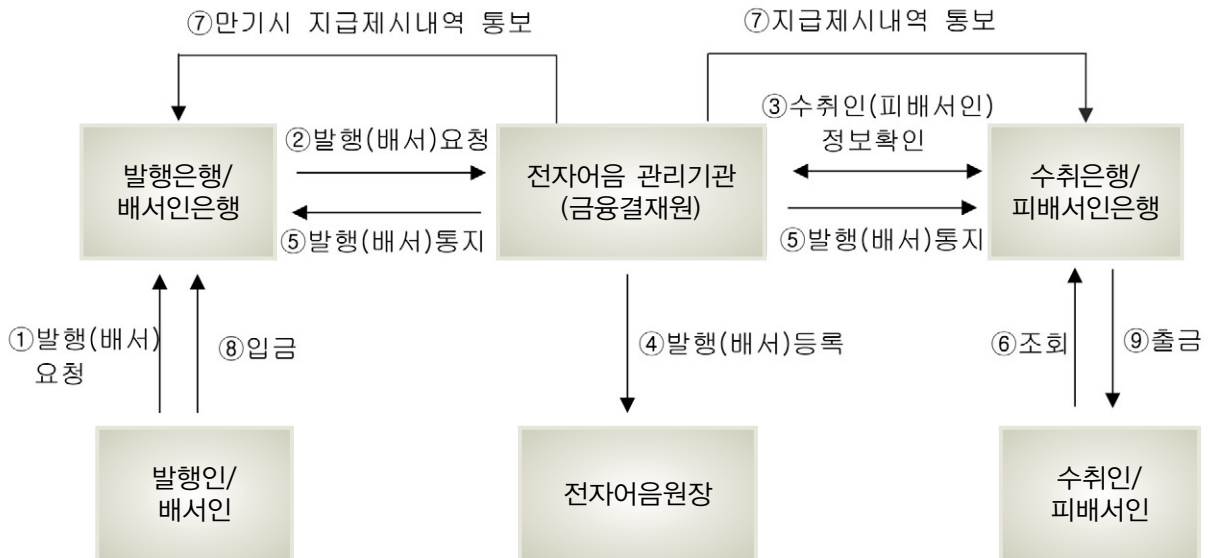
## 3. 조합원의 전자어음의 할인 신청 절차

- 거래은행에 전자어음 이용신청서 제출
  - 전자어음을 수취, 배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사용가능

- 조합 지점이나 영업소에 어음할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 어음할인한도, 할인대상 어음인지 여부, 제출서류 등에 대한 문의
- 전자어음의 배서
  -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 혹은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배서할 어음을 선택한 후 전자어음 배서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피배서인 인적사항 등)하고 공인 인증서로 전자어음에 배서
  - 배서수수료(2,000원) 납부
- 배서가 완료되면 조합에서 최종 심사후 할인어음금 입금

- ※ 조합원의 건설업체로부터의 전자어음 수취 절차
- 거래은행에 전자어음 이용신청서 제출
    -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자어음의 수취 및 배서 가능
  - 발행인이 조합원을 수취인으로 하여 전자어음 발행
  - 조합원은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역을 조회
  - 조회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수령 거부가 가능하며, 수령을 거부하면 어음 발행이 무효처리됨

### <전자어음의 발행 및 할인 흐름도>



※ 어음할인시에는 조합원은 배서인, 조합은 피배서인이 됩니다.

## 조합원사 업무지원을 마치고

손인성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중앙지점 부지점장

몇 일전 업무상 여러 조합원사에 전화를 하던 중 보쓰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인 김관수 사장님과 통화를 하다가 조합업무를 담당하시던 부장님의 갑작스런 유고로 회사가 한동안 매우 어려웠으며 특히 조합업무를 하실 줄 아는 분이 없어서 답답하시다는 말씀을 들었다.

하여 지점장님과 상의한 결과 유선상 업무안내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업무안내도 해드리고 특히 인터넷업무를 자세히 알려주어 사무실에서 편하게 업무를 보시도록 도와드리자는 의견을 주시어 그리 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다음날인 2009.8.14(금) 11시경 나와 박성미 대리가 보쓰엔지니어링(주)을 방문하게 되었다.

보쓰엔지니어링(주)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회사로 지점에서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직통노선이 없어 버스 및 택시로 이동하여 찾는데 약간 헤맸

지만 약40분 정도 걸려서 무사히 도착하였다.

사무실은 기정빌딩 이라는 건물 2층에 있는데 전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간결하게 정리가 잘된 느낌을 받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관수 사장님께서 우리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시며 쇼파로 안내한 뒤 직접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를 들고와 더운데 한병씩 마시라며 손에 쥐어 주신다.

잠시 앉아 조합근황, 업계이야기 등 담소를 나누고 박성미 대리는 바로 담당직원에게 다가가서 직접 화면을 보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준다. 애석하게도 얼마 전 업무를 잘 몰라 보증서 한건을 서울보증에서 발급받았다는 말에 수수료를 떠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애석함과 좀 더 일찍 이런 사실을 알고 도와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교차한다.

우리가 도착하여 업무안내를 시작했을때는 이미



▲ 조합원사 업무편의를 위해 보쓰엔지니어링(주)을 방문한 손인성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중앙지점 부지점장



▲ 보쓰엔지니어링(주)을 함께 방문한 박성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중앙지점 대리

담당직원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아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서 많이 가르쳐 줄 것이 없었다고 박성미 대리는 말한다.

하여간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가지고간 업무 안내 책자 3권을 담당직원에게 주면서 참고 하시고 필요하면 더 보내드릴테니 연락 달라는 말을 끝으로 업무안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후 사장님께서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 점심 같이 하자 하시길래 못 이기는척 점심을 얻어먹으려 따라나섰다.

식당은 깔끔한 일식집이었는데 식당이름이 “해운대”다. 갑자기 재작년 여름 부산에서의 추억이 잠시 스치운다. 그리운 부산…….

보스엔지니어링(주) 직원들 일부와 우리 둘 모두 6명이 각자 알탕, 알밥 등 취향에 맞추어 주문을 하는데 박성미 대리가 식사 중이던 누구와 아는척을 한다. 아니 여기서 누구 아는 사람이? 잠시 후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우양기건(주) 직원이란다. 우리사무실에 출입하는…….

해서 점심식사 후에 잠시 들른다고 이야기 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보스엔지니어링(주) 직원들은 먼저 들어가고 사장님과 우리 둘이 약 5분정도 더 담소를 나누다 일어

났다. 사장님께서 우양기건 사무실 위치 알려주신다며 무더운 땀별에 동행해 주신다. 식당에서 약20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헤어졌다.

우양기건 사무실에 올라갔으나 모두 업무로 바쁘고 약속 없이 불쑥 찾아간거라 담당직원과 눈인사만 나누고 나온다.

작은 일이지만 조합원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위하여 방문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감을 느낀 하루였다.

지점장님도 많이 도와드리고 왔냐며 더운데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터넷 업무 등 조합원사가 우선상으로 배우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다소 바쁘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오늘과 비슷한 지원을 해 주라고 하신다.

사무실에서 찾아오는 손님들께 친절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처럼 우리가 조합원사에 먼저 한발 다가서는 적극적인 친절과 서비스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고객 아닌가!

실례가 될까봐 사무실내 촬영은 하지 않고 둘이서로 한 장씩 찍어준 사진이다. 📷



한눈에 보는 세계사와 유명인물

탈춤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무용을 주로 한 가면극인 탈춤이 있었다. 탈춤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다른 인물, 동물 또는 초자연적 존재 등의 가면을 쓰고 분장하여 음악에 맞춰 춤과 대사로 연극을 하는 것을 말한다. 탈춤은 모두 열두 마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의 전승한 대로 연기한다. 그 중에 말뚝이 과장이라는 것이 있다. 취발이가 “말뚝아,

말뚝아!”하고 수없이 불러도 탄전을 부리면서 통명스럽게 “네, 네!”하고 대답만 하였는데 이런 말이 실제로 많이 쓰였을 정도로 과거에는 탈춤이 무척 친근한 존재였다. 산대놀이탈춤, 봉산탈춤, 오광대탈춤, 오방신장무, 사자탈춤 등의 탈춤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산대놀이 탈춤은 사용되는 탈이 18가지나 되어 매우 다채롭다.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시행에 따른 알림

원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 불공정 하도급 사전방지, 불법행위 상시모니터링, 기성실적 증명서 이용 등 원도급 및 하도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 및 건설산

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행함에 따라,

원도급(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사항을 홍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구 분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시 행 일	2003년 1월 1일 이후 원도급 계약 체결된 공사	2008년 1월 1일 이후 하도급 계약 체결된 공사
통보대상 공 사	1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vat포함) 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된 공사는 3억원 이상	1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vat포함)
통보시기	원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Url : <a href="http://www.kiscon.net">http://www.kiscon.net</a> 에 접속한 후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화면으로 이동	
기재사항	원도급(하도급)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공사대금수령현황, 현장기술인 현황 등	
과 태 료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위반회수 1건당 과태료 100만원	

### 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의하

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

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의 원도급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외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부실벌점관리시스템(PIS), 정부인트라넷(GO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http://www.kiscon.net> 에 접속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를 선택합니다.

##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하도급 받은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5.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누구에게 통보해야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 6.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서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조회할 수가 없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작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7.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 하도급 건설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 통보해야 합니다.

### 8.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됩니다.
- 현재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입니다.
- 즉, '08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현장으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

하여야 합니다.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통보대상여부
1억원 이하	하도급공사	X
1억원 이상	4천만원 이상 하도급공사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4천만원 이하 하도급공사	X

### 9.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4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도급금액에는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하도급 공사가 '08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되었으나 원도급공사가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경우에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됩니다.
- 즉,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된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지 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원도급 계약시기	원도급 공사규모	하도급대장 통보여부
'02년 12월 31일 이전	-	X
'03년 1월 1일 ~ '03년 12월 31일	3억원이하 3억원이상	X O
'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이하 1억원이상	X O

- '08년 1월 1일 이전에 원도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 경우, '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된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대상이 됩니다.

**11.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 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건설업담당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및 부과사유"를 요청받은 경우 처분여부를 검토 후 처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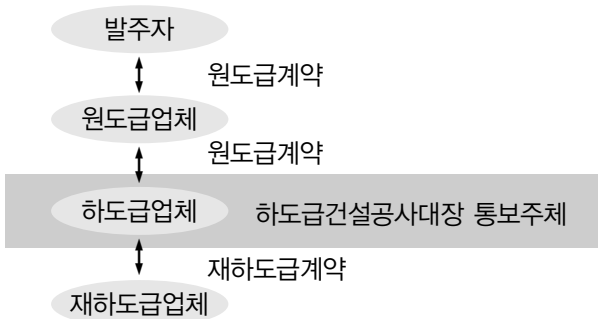
**12. 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는?**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변경일/신규사항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자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를 하는 경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설업체가 과태료처분대상자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동안 발주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 ※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13.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공사(재하도급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 원도급업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하도급업체만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재하도급업체는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2가지 경우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허용됩니다.

- ① 동법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로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재하도급의 범위))에 해당되며
  - ㉡수급인에게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 위의 2가지 경우 외에 재하도급 한 경우에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재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 단순 납품의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원도급업체로부터 납품과 함께 그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 해야 합니다.

**15.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하도급 공사포함)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99조제2호의 규정에서는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2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 하여야 합니다.

**16.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